

	<h2 style="margin: 0;">동아리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6-1
		제정일자	2012.02.01.
		개정일자	2024.09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동아리 인가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동아리는 전공동아리와 일반동아리로 구분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전공동아리의 경우 해당학과 인원만으로 구성하며, 회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일반동아리의 경우 3개학과 이상이 연합하여 회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동아리의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동아리, 전공동아리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활동) ① 전공동아리의 경우 학과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② 일반동아리의 경우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방침을 준수하고 동아리 활동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등록절차 및 승인) ① 전공동아리 및 일반동아리를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인가 신청서를 학생성공처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제출한다.

② 동아리 승인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③ 동아리는 1년 단위로 승인한다.

제6조(등록 취소 및 불허) 다음 각호의 경우 동아리 등록을 취소 및 불허한다.

1. 우리대학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동아리 활동목적에 부적절한 활동을 한 경우
2. 학칙 또는 교내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동아리 활동이 저조하거나 회원이 이탈하여 구성인원을 유지 못한 경우
4. 동아리방 내에서 음주 및 흡연으로 2회 적발된 경우
5. 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자체평가서를 미제출한 경우

제7조(지원 및 사용) ① 전공동아리 및 일반동아리에 교비 예산범위 내에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일반동아리의 경우 동아리활동 공간(동아리방)을 대학 공간 내에서 제공 할 수 있다.

③ 동아리 활동비는 동아리지도교수(이하 “지도교수”라 한다) 책임 하에 동아리 활동시 사용한다.

④ 기타 동아리 지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교수) ① 각 동아리는 지도교수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지도교수를 필히 두어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을 관리·감독하며 동아리 활동시 참석 한다.

③ 지도교수는 일반동아리, 전공동아리 구분없이 지도할 수 있다.

④ 지도교수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기별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해체)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동아리 대표자는 해체 신청서를 학생성공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이 규정은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